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김영진·백혜련·이학영

강유정 · 김성회 · 김승원

염태영 · 정성호 · 이연희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 과하여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경제성 집중효과를 새롭게 유발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활동을 왜곡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여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각・철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후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을 매각・철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후 공장을 신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⑦ (생 략) 중과)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본점이 나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 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을 매각·철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후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 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 는 경우와 공장을 이전하기 위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는 산업 단지 ·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 다)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을 매 각 · 철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처분한 후 공장 을 신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인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9) (현행 제8항과 같음)

⑧ (생략)